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84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의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고시정비가 필요함.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근거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방법에 대한 고시를 다시 제정하고, 기존의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은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등록 소상공인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금전채무의 정의(안 제3조)

다. 무등록 소상공인의 사업사실 확인방법(안 제4조)

라. 사업사실 확인자(안 제5조)

마. 확인서의 유효기간(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25일 까지 중소기업부장관(참조 : 기업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rustkis@korea.kr](mailto:trustkis@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기업부 기업금융  
과

3) 팩스 : (044) 204 - 75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 (044) 204 - 7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